

2020년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0. 9. 7. ~ 9. 11.(5일간) / 2017. 11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3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3건 (주의 7건, 시정 5건, 개선 1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3건 / 460,69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민원실 대기 번호표 발급기 운영

- 보건소 민원실 접수 시 민원인 편의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번호표 발급기 설치 운영
- 민원인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원인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3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보건소	총 13건	주의 7 시정 5 개선 1		회수 3건 460,690원
1	복무(1)	◦ 공중보건 의사 복무관리 소홀	주의		
2	위탁사업(1)	◦ 영동구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사무 관리 부적정	개선		
3	예산회계(10)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 소홀	주의		
4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시정		
5		◦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6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7		◦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특별)징수 의무 미이행	시정		
8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부적정	주의		
9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41,280원
10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35,000원
11		◦ 전기요금 납부 소홀	시정		회수 84,410원
12		◦ 하자담보책임 보증기간 산정 부적정	주의		
13	세입(1)	◦ 의료사업수입(진료수입 등) 세입조치 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중보건 의사 복무관리 소홀

【현 황】

○ 붙임

【위법부당사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보건 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9조 제8항에는 공중보건 의사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는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를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중보건 의사 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7~2020년)」 I.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 7.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 다. 공중보건 의사의 휴가 4)병가 규정을 보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 [붙임 1]과 같이 공중보건 의사[중위] A 외 3명에 대하여 6일을 초과하는 병가신청에 대해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승인처리하였으며, [붙임 2]와 같이 공중보건 의사[중위] E에 대하여 진단서에서 명시한 가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 병명 또는 다른 질병으로 추가진단 없이 신청한 병가를 승인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1] 진단서 미첨부 6일 초과 병가 승인 내역

직급	성명	병가시작일시	병가종료일시	병가일수	병가 사유	비고
소 계	A			6일2시간30분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8-02-26 13:00	2018-02-26 18:00	5시간	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8-02-08 13:00	2018-02-08 18:00	5시간	중증의편두통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12-22 16:30	2017-12-22 18:00	1시간30분	감기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12-08 09:00	2017-12-08 18:00	1일	치과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10-25 13:00	2017-10-25 18:00	5시간	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09-27 13:00	2017-09-27 18:00	5시간	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09-18 14:00	2017-09-18 18:00	4시간	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07-27 09:00	2017-07-27 18:00	1일	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06-20 13:00	2017-06-20 18:00	5시간	감기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A	2017-05-02 09:00	2017-05-02 14:00	4시간	치과진료	
소 계	B			6일3시간		
공중보건 의사 (중위)	B	2019-03-04 09:00	2019-03-04 12:00	3시간	치루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B	2019-02-25 09:00	2019-02-25 18:00	1일	치열로 인해 병원 진료 및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B	2019-02-22 09:00	2019-02-22 18:00	1일	외과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B	2018-12-31 09:00	2018-12-31 18:00	1일	감기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B	2018-12-10 09:00	2018-12-10 18:00	1일	감기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B	2018-11-19 09:00	2018-11-19 18:00	1일	감기몸살	
공중보건 의사 (중위)	B	2018-10-08 09:00	2018-10-08 18:00	1일	감기몸살	
소 계	C			8일2시간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9-03-29 17:00	2019-03-29 18:00	1시간	예약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9-03-22 14:00	2019-03-22 18:00	4시간	병원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9-02-28 14:00	2019-02-28 18:00	4시간	정기 검진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9-02-22 15:00	2019-02-22 18:00	3시간	정기 검진	

직급	성명	병가시작일시	병가종료일시	병가일수	병가 사유	비고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9-01-23 09:00	2019-01-23 18:00	1일	수술 후 정검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12-27 17:00	2018-12-27 18:00	1시간	고열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12-19 15:00	2018-12-19 18:00	3시간	고열 동반 설사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12-04 09:00	2018-12-04 18:00	1일	정형외과 시술 후 진료 예약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8-21 16:00	2018-08-21 18:00	2시간	발목 정형외과 정 기검진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8-06 16:00	2018-08-06 18:00	2시간	급성 장염으로 인 한 병가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7-27 16:00	2018-07-27 18:00	2시간	광주 병원 정기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7-06 16:00	2018-07-06 18:00	2시간	발목 인대 수술 후 검진	병가사유 와 상0한 진단서 첨부 (모발이 식)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6-29 16:00	2018-06-29 18:00	2시간	발목 수술 부위 실밥 제거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6-22 09:00	2018-06-22 18:00	1일	발목 인대 수술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6-15 16:00	2018-06-15 18:00	2시간	오른쪽 발목 인대 2단계 손상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5-31 09:00	2018-05-31 18:00	1일	발목 염좌로 인한 정밀 진단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5-30 15:00	2018-05-30 18:00	3시간	발목 염좌로 인한 정밀 진단	
공중보건 의사 (중위)	C	2018-05-04 15:00	2018-05-04 18:00	3시간	발목 염좌 및 감기 몸살로 반일 진료 를 하고자 함.	
소 계	D			6일2시간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9-03-28 14:00	2019-03-28 18:00	4시간	치주염 진료 및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9-03-22 09:00	2019-03-22 18:00	1일	치주염 진료 및 정밀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9-02-28 16:00	2019-02-28 18:00	2시간	치주염 진료 및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9-02-22 16:00	2019-02-22 18:00	2시간	치주염 진료 및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9-02-08 16:00	2019-02-08 18:00	2시간	치주염 진료 및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9-01-25 14:00	2019-01-25 18:00	4시간	치주염 진료 및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8-12-19 16:00	2018-12-19 18:00	2시간	병원진료	

직급	성명	병가시작일시	병가종료일시	병가일수	병가 사유	비고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8-12-14 15:00	2018-12-14 18:00	3시간	치주염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8-10-26 16:00	2018-10-26 18:00	2시간	치주염 진료 및 치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8-08-14 16:00	2018-08-14 18:00	2시간	정형외과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8-07-23 09:00	2018-07-23 18:00	1일	정형외과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8-07-20 09:00	2018-07-20 18:00	1일	정형외과 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D	2018-05-04 15:00	2018-05-04 18:00	3시간	몸살감기	

[붙임2] 추가진단 없이 6일 초과 병가 승인 내역

직급	성명	병가시작일시	병가종료일시	병가일수	병가 사유	비고
계	E			6일6시간[진단서 미첨부] 3시간[진단서 첨부]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8-04-10 09:00	2018-04-10 18:00	1일	요부통증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8-04-03 09:00	2018-04-03 18:00	1일	요부통증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8-01-11 16:00	2018-01-11 18:00	2시간	견비통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8-01-02 16:00	2018-01-02 18:00	2시간	허리통증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7-12-28 15:00	2017-12-28 18:00	3시간	병원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7-12-07 09:00	2017-12-07 18:00	1일	병원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7-11-28 13:00	2017-11-28 18:00	5시간	병원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7-11-21 13:00	2017-11-21 18:00	5시간	병원진료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7-09-26 13:00	2017-09-26 18:00	5시간	경추부통증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7-09-19 09:00	2017-09-19 18:00	1일	요부통증	
공중보건 의사 (중위)	E	2017-04-18 09:00	2017-04-18 12:00	3시간	요통	진단서 (2주)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사무 관리 부적정

【현 황】

1. 2019 ~ 2020 민간위탁금(군비) 지원현황

(단위:원)

사 업 명	위 탁 금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	비고
'19 치매환자 관리운영비 지원	250,000,000	111,159,100	138,840,900	86,765	정산 완료
'20 치매환자 관리운영비 지원	250,000,000	-	-	-	집행중

2.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일반현황

- 병원종별 : 요양병원
 - 위 치 : 영동읍 대학로 290
 - 진료과목 : (정형)외과, 한의과
 - 개 원 일 : 2009. 4.
 - 병 상 수 : 22실 120병상
 - 위탁기간 : '19.7.1. ~ '24.6.30.(5년)
 - 치매전문병동 : 10실 54병상
 - 수 탁 자 : (의)****재단 대표 박**
- ※현 수탁자는 '14.7.1~'19.6.30에 이어 재위탁 상태임.

【위법부당사항】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미실시 >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성과평가)에 따라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②성과평가의 결과는 기존 수탁자와 기간갱신시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영동군 보건소에서는 2019. 6. 30일로 위탁사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9. 4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5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9. 5. 20.일 기존 수탁자인 (의)중앙의료재단과 위탁사무의 기간갱신에 합의하는 위.수탁협약식을 체결하였음.

- 영동군 보건소에서는 기존 수탁자와 위탁사무의 기간갱신을 검토 하기에 앞서 2019. 3월말까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부실한 위탁사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검토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존 수탁자와 위탁사무에 대한 기간갱신을 한 사실이 있음.

〈 민간위탁금 지원기준 부적정 〉

-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4항에 따라 군립 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군립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부속서류 포함)와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2017 ~ 2019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아 작성하여 영동군 보건소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손익계산서상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 ~ 2019 손익계산서 주요내역 - 요약〉

(단위:원)

과목	제6기 (*19.1.1~12.31)	제5기 (*18.1.1~12.31)	제4기 (*17.1.1~12.31)	비고
I.의료수익	비공개			
II.의료비용				
III.의료이익(손실)				
IV.의료외수익				
V.의료외비용				
VI.법인세비용차감 전순이익(손실)				
VII.법인세등				
VIII.당기순이익(손실)				

- 위 표와 같이 2017 ~ 2019 3년동안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매년 ○○○○원의 손실(적자)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보건소에서는 2019.1.22.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관리 운영비 지원계획(보건행정과-1497)’ 을 수립하면서 치매전문병동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민간위탁금 교부결정액 내에서 지급하고, 2019년도 병원운영비 결산서의 적자금액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 조례의 단서를 명시하였음. 2020년도에도 1.22. 같은 제목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동일한 단서를 달고 추진한 바, 2019년도에 2억5천만원 지원액 중 111,159,100원을 집행하고 138,840,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처리 하였으며, 2020년도는 현재 관련 사업 비로 집행중에 있음.
-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병원의 회계는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적자분에 한해 지원 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이 사문화되지 아니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원기준 수립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음에도, 위 표에서와 같이 지난 3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원의 손실(적자)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2억 5천만원의 예산(군비)을 편성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시고,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위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지원(적자분에 한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 소홀

【현 황】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현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징수·재무관	2018. 7. 1.	F	G	미보고
	2019. 9.10.	G	H	미보고
분임재무관	2020. 1. 1.	I	J	미보고
	2020. 9. 1.	J	K	미보고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2019. 8. 1.	L	M	미보고
	2020. 7.10.	N	L	미보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18. 7. 2.	G	O	미보고
	2020. 7.10.	O	P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대상기간인 2017. 11월 이후 인사이동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경 되었으나 감사일 현재 까지 한건도 이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출건명	지급일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자동약포장기 구입	18.02.07.	11,913	290	170	120	과다매입
자동약포장기 구입	18.02.07.					
보건기관 전기 수리	18.12.28.	3,790	90	80	10	과다매입
치매안심센터 물품 구입	18.12.28.	4,772	80	70	10	과다매입
부상보건진료서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	18.12.31.	4,818	120	70	50	과다매입
틀니살균세척기 추가 구입	19.02.25.	2,659	40	30	10	과다매입
치매안심센터 사무용기기 구입	19.03.06.	2,163	-	30	-30	매입누락
치매안심센터 관리용 CCTV 설치	19.06.28.	4,050	110	60	50	과다매입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배식카 구입	19.10.10.	9,818	240	140	100	과다매입
직원 근무복 구입	19.10.10.	3,851	60	50	10	과다매입
구강보건사업 소모품구입	19.10.30.	2,195	40	30	10	과다매입
10월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19.11.04.	3,112	50	40	10	과다매입
경로당 인지프로그램 운영 교재 구입	20.02.07.	2,500	40	30	10	과다매입
2월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20.03.05.	2,044	40	30	10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2018년 자동약포장기 구입 외 11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거나, 2019년 치매안심센터 사무용기기 구입 건에 대해 매입대상임에도 채권을 징구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누락된 채권 1건을 징구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처리 내역

예산 과목	집행 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업무 담당자
사무관리비	18.03.23.	정신건강복지센터 안 내관 설치	240,000	-	약삭계약 이면기재사항 승인 누락	
공공운영비	18.04.06.	3월 후남우편요금	574,930	-	지급명령번호 기재 누락	
사무관리비	18.10.30.	제증명 민원서식 인 쇄	670,000	-	약삭계약 이면기재사항 승인 누락	
사무관리비	18.10.30.	난계국약축제장 자살 예방 캠페인 실시 물 품구입	890,000	-	품의 시 홍보물은 사무관리비 (570천원) 간삭비는 행사실비 보상금(320천원) 집행으로 구 분으로 하였으나 전체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사무관리비	18.11.07.	보건소 소모품(행정봉 투)구입	220,000	-	납품확인 누락	
공공운영비	18.11.07.	학산보건지소 탕비실 사용 프로판가스 구입	78,000	-	납품확인 누락	
자산및물품 취득비	19.02.07.	보건소 사무실 불박이 장 설치	6,226,000	-	통합발주 가능함에도 분리발 주하여 채권매입 1만원 누락	
자산및물품 취득비	19.02.07.	사무실 분리용 칸막이 구입	525,800	-		
사무관리비	19.02.25.	생명배달 배너 제작 및 거치대 구입	200,000	-	세금계산서(100천원)누락	
사무관리비	19.03.29.	생명지킴이 위촉장 및 L자 파일 제작	863,000	-	약삭계약 이면기재사항 승인 누락, 청구액(863,500)과 지출액 상이	
자산및물품 취득비	19.10.10.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배식카 구입	10,800,000	-	대금지급 지연 (청구일 9.24.)	
사무관리비	19.10.10.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홍보물품 구입	4,600,000	-	대금지급 지연 (청구일 9.24.)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되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2018. 3. 23.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판 설치 외 2건에 대해서는 약식계약 이면기재사항 승인 날인을 누락 하였으며, 2019. 10. 10.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배식카 구입 외 1건에 대해 대금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하였고, 2018. 10. 30. 난계국악축제장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지출 과목을 잘못선택하여 집행, 2019. 2. 7. 보건소 사무실 불박이장 설치와 사무실 분리용 칸막이 구입 건은 통합발주 가능 건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여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 누락, 그 외에 세금계산서 누락, 지출결의서 상 지급명령번호 기재 누락, 납품 확인 누락, 청구액과 지출액을 상이하게 지출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현황

회계 년도	세부 사업	통계목	부기명	집행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9	보건행정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커튼 및 그림썬타지 설치비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내부 유리 그림시트지 제작 설치	5,500,000	5,300,000	
2019	보건행정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LED 전등 구입	보건소 LED등 교체	5,000,000	2,950,000	1,101 천원 초과 집행
				보건기관 LED전등 교체		3,151,000	
2019	보건행정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온수탱크 교체	-	12,915,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에 따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써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6.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에 필요한 경우 편성하며,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함.

- 「영동군 물품관리조례」 제5조 및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따르면 비품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토록 되어 있음.
- 청사 내부 유리에 부착하는 시트지는 청사 건물의 구성이 되는 소모품으로 홍보의 성격이 있으면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건물의 유지관리의 목적이 있으면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함.
또한, 보건소 LED등 교체 및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온수탱크 교체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함.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치매안심센터 내부 유리 그림시트지 제작설치비 및 보건소 LED등 교체비, 보건기관 LED전등 교체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특히 LED등 교체비는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온수탱크 교체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는 사유를 들어 보건행정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내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전동침대 구입비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현 황】

-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지급일	교육명	기 간	강사수당 지급액				미공제 세액
	(강사명)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합계			1,000,000	0	0	1,000,000	57,200
2018.03.08.	구조 및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	2018.01.29. ~	400,000	0	0	400,000	17,600
	***	2018.02.20.					
2018.03.08.	구조 및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	2018.01.30. ~	300,000	0	0	300,000	13,200
	***	2018.02.09.					
2019.12.05.	구조 및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	2019.11.19. ~	150,000	0	0	150,000	13,200
	***	2019.11.26.					
2019.12.05.	구조 및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	2019.11.20. ~	150,000	0	0	150,000	13,200
	***	2019.11.22.					

【위법부당사항】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0%), 지방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의 필요경비율

기간	필요경비율	원천징수 세율	과세최저한
~ 2018. 3월까지	80%	4.4%	250,000원
2018. 4월 ~ 12월	70%	6.6%	166,666원
2019년 이후	60%	8.8%	125,000원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2018년 ~ 2019년 구조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현황에서와 같이 강사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누락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부적정

【현 황】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원]

지급일자	적요	사용목적	집행액	지급과목	해소과목
합 계	7건		1,251,000		
2017.11.20.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지모니터링 관계자 특산품구입(와인)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자 특산품구입	65,000	부서운영	시책추진
2018.02.28.	보건소 직원 청소 봉사활동에 따른 식사제공	보건소 직원 식사제공	518,000	정원가산	부서운영
2018.06.28.	소장님 재직기념패 제작	보건소장 공로연수에 따른 기념패 제작	200,000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18.12.27.	재직기념패 제작	보건소 직원 공로연수에 따른 기념패 제작	190,000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19.02.13.	화분구입	영동병원 안과개소 축하	50,000	시책추진	-
2019.05.29.	희망복지박람회 행사에 따른 음료구입	행사추진에 따른 음료 구입	178,000	부서운영	행사운영비
2020.06.26.	2020년 상반기 퇴직기념꽃다발 구입	보건소 직원 퇴직에 따른 꽃다발구입	50,000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¹⁾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9.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하여야 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개인적인 용도 또는 월정액으로 집행을 금지하고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한 바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전체직원의 사기 양양과 실·과·소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하는 경비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지모니터링 관계자 특산품구입(와인)” 외 총 7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41,28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1. 비상근무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 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 시간	적정 시간	비고
			구분		(분)	(분)	(분)	(분)	
2018-04-01	**6급	G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6급	Q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6급	M	휴일	현업	09:06	18:00	54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6급	R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6급	S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7급	T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6급	U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7급	V	휴일	현업	09:28	18:00	32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6급	W	휴일	현업	09:22	18:00	38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8급	X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9급	Y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9-09-22	**6급	S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태풍비상근무
2019-09-22	**6급	Z	휴일	현업	09:00	18:00	60	480	태풍비상근무

2.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130	173	303	3,321,250	130	160	290	3,179,970	141,280	
**6급	G	11,401	10	13	23	262,220	10	12	22	250,820	11,400	2018. 4월분
**6급	Q	11,401	10	9	19	216,610	10	8	18	205,210	11,400	2018. 4월분
**6급	M	11,401	10	29	39	444,630	10	28	38	433,230	11,400	2018. 4월분
**6급	R	11,401	10	9	19	216,610	10	8	18	205,210	11,400	2018. 4월분
**6급	S	11,401	10	19	29	330,620	10	18	28	319,220	11,400	2018. 4월분
**7급	T	10,299	10	13	23	236,870	10	12	22	226,570	10,300	2018. 4월분
**6급	U	11,401	10	9	19	216,610	10	8	18	205,210	11,400	2018. 4월분
**7급	V	10,299	10	9	19	195,680	10	8	18	185,380	10,300	2018. 4월분
**6급	W	11,401	10	14	24	273,620	10	13	23	262,220	11,400	2018. 4월분
**8급	X	9,246	10	9	19	175,670	10	8	18	166,420	9,250	2018. 4월분
**9급	Y	8,357	10	9	19	158,780	10	8	18	150,420	8,360	2018. 4월분
**6급	S	11,634	10	20	30	349,020	10	19	29	337,380	11,640	2019. 9월분
**6급	Z	11,634	10	11	21	244,310	10	10	20	232,680	11,630	2019. 9월분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매년 시행), 부서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과의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편성한 근무자 명단 등에 대하여 주중 및 주말근무 시 일일 상한시간 8시간, 월 70시간 범위 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현황 1]에서와 같이 **6급 G 외 12명에 대하여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현업으로 신청하였음에도 [현황 2]에서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141,28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과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141,28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35,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1.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440,000	240,000	200,000	
2019.02.07.	**6급 AB	2019.01.11.	치매예방관리업무추진 (09:30~14:00) (15:00~17:00)	30,000	20,000	1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회 지급)
2019.02.07.	**9급 AC	2019.01.14.	보건사업추진 (제126호, 기본업무추진) (제12호, 진료사업추진)	40,000	20,000	2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회 지급)
2019.03.06.	**6급 O	2019.02.11. ~ 2020.02.27.	의약업무추진 외 (관내출장 4시간이상 5건)	140,000	100,000	4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019.03.06.	**6급 S	2019.02.08. ~ 2019.02.26.	의약업무추진 외 (관내출장 4시간이상 5건)	150,000	100,000	5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019.03.06.	**6급 M	2019.02.11.	2019년 1회 추경안 심의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03.06.	**6급 M	2019.02.12	영동군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숍 참석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03.08.	**6급 AB	2019.02.2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20,000	0	2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03.08.	**9급 AD	2019.02.21.	재난현장교육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03.08.	**5급 H	2019.02.14.	건강증진사업추진	10,000	0	10,000	미결재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2019.03.20.	**7급 AE	2019.02.18.	방문보건업무 추진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03.20.	**7급 AE	2019.02.21.	재난현장대응조치 매뉴얼 교육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120,000	85,000	35,000	
2019.02.07.	**6급 AF	2019.01.30.	식의약품 사업설명 회 참석 (09:30~17:30)	일비	10,000	1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4,000	7,000	7,000	
				교통비	0	0	0	
2019.03.06.	**7급 AG	2020.02.20.	홍역항체검사관련 검체 배송 (09:30~17:00)	일비	10,000	1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4,000	7,000	7,000	
				교통비	0	0	0	
2019.04.02.	**6급 AF	2020.03.22.	보건행정업무추진 (09:30~17:00)	일비	10,000	1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4,000	7,000	7,000	
				교통비	0	0	0	
2019.04.02.	**7급 AG	2019.03.13.	차량정비 (10:00~17:00)	일비	10,000	1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4,000	7,000	7,000	
				교통비	0	0	0	
2019.07.02.	**7급 AG	2019.06.11.	분만취약지 현장 점검 (09:30~17:30)	일비	10,000	1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4,000	7,000	7,000	
				교통비	0	0	0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호 및 별표1에 따른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위와 같이(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하며,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규정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규정에 따라 1일당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숙박비 1박당 4~7만원(정액지급 시 4~6만원, 실비정산 시 5~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위 [현황1]과 같이 **6급 AB 외 7인의 경우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1일 여비지급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세부사업 목적과 다르게 출장하였음에도 출장비를 지급하였고, [현황2]와 같이 **6급 AF 외 1인의 경우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9시 이후 출장을 시작하여 18시 이전에 출장을 완료하였음에도 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총 235,000원의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과다지급된 여비 235,000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84,41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기요금 납부 소홀

【현 황】

- 전기요금 연체료 납부 내역

(단위:원)

연번	건명(고객명)	지출일	납부금액	연체료	연체료 예산지출여부	비 고
합계			10,222,190	84,415		
1	영동군보건소	17.12.26.	1,657,130	34,296	여	
2	영동군보건소	18.03.23.	1,903,470	7,399	여	
		18.03.27.	247,150			
3	공촌보건진료소	18.04.03.	1,081,490	7,943	여	
4	영동군보건소	18.04.20.	804,320	6,985	여	
5	영동군보건소	18.04.20.	856,820	8,627	여	
		18.05.04.	204,780			
6	영동군보건소	18.05.04.	490,450	12,932	여	
7	공촌보건진료	18.06.22.	1,282,660	5,287	여	
8	공촌보건진료	18.07.20.	1,693,920	946	여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의 회계담당직원은 신규로 추가된 시설의 경우 개별고지납부를 지양하고 인터넷 빌링(Billing)을 신청하여 합산 청구토록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자동이체의 경우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출하여 계좌로 입금하여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있는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일까지 자동이체 공공요금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서 청구전에 대해서도 납기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전기요금 납부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해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8건의 고지 건에 84,415원의 연체료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지출 처리되어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예산지출된 연체료 84,41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하자담보 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하자담보 기간	하자담보기간 지연일수	비고
보건지소 CCTV 구매설치	37,757	(주)**** *** 외1인	19.11.27. 19.11.27. 19.12.18.	19.12.19.	19.12.20. ~ 21.12.19.	1일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2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19.11.27. (주)**** ***외 1인과 조달구매 계약 체결하여 추진한 <보건지소 CCTV 구매설치> 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보증기간 시작일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적용,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인수가 가능한 바 준공검사일을 보증기간 시작일로 보아야 하나, 준공일 다음날을 시작일로 적용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의료사업수입(진료수입 등) 세입조치 소홀

【현 황】

○ 수입금 세입조치 지연 현황

구분	회계연도	대상건수	지연세액	지연일수	비고
합계		365건	5,088,790원		
공촌보건진료소	2018	1건	5,400원	6일	
	2020	1건	21,200원	7일	
누교보건진료소	2018	1건	3,600원	6일	
	2019	2건	15,300원	7 ~ 9일	
	2020	2건	9,000원	7 ~ 8일	
매곡보건지소	2018	2건	2,200원	4 ~ 7일	
	2019	2건	4,000원	5일	
	2020	5건	21,300원	4 ~ 5일	
매금보건진료소	2018	1건	900원	7일	
물한보건진료소	2017	1건	2,700원	7일	
	2018	18건	216,000원	6 ~ 15일	
	2019	7건	82,610원	6 ~ 7일	
	2020	3건	17,100원	7 ~ 14일	
범화보건진료소	2019	1건	1,800원	7일	
상촌보건지소	2017	4건	64,600원	4 ~ 5일	
	2018	61건	1,051,780원	3 ~ 13일	
	2019	21건	505,160원	3 ~ 11일	
	2020	1건	5,600원	4일	
삼천보건지소	2020	1건	1,100원	4일	
양산보건지소	2019	3건	58,600원	3 ~ 4일	

구분	회계연도	대상건수	지연세액	지연일수	비고
영동군보건소	2018	3건	70,860원	4일	
	2019	9건	148,940원	3 ~ 4일	
	2020	6건	22,600원	3 ~ 5일	
용산보건지소	2018	3건	2,600원	4일	
	2019	6건	4,000원	3 ~ 5일	
용암보건진료소	2018	4건	63,600원	6 ~ 7일	
	2019	4건	52,500원	6 ~ 14일	
용화보건지소	2018	9건	75,200원	3 ~ 4일	
	2019	3건	3,800원	5일	
	2020	3건	50,100원	4 ~ 6일	
조동보건진료소	2018	2건	26,100원	7일	
	2019	9건	242,690원	6 ~ 10일	
	2020	6건	134,760원	7일	
지내보건진료소	2018	1건	7,200원	7일	
추풍령보건지소	2017	4건	28,100원	3 ~ 5일	
	2018	12건	269,190원	3 ~ 7일	
	2019	34건	722,680원	3 ~ 7일	
	2020	31건	909,030원	3 ~ 8일	
학산보건지소	2018	9건	21,800원	3 ~ 6일	
	2019	14건	63,500원	3 ~ 8일	
	2020	1건	2,200원	6일	
황간보건지소	2017	1건	400원	4일	
	2018	13건	20,320원	3 ~ 5일	
	2019	8건	11,200원	3 ~ 6일	
	2020	32건	45,470원	3 ~ 6일	

【위법부당사항】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고의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의료사업수입(진료수입 등)을 수납한 날의 익일(단, 익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까지, 금고의 소재지 밖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군 금고에 납입하여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
- 그러나,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에서는 [현황]과 같이 의료사업수입(진료수입 등)을 수납한 다음날(보건진료소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건/95,800원, 2018년 140건/1,836,750원, 2019년 123건/1,916,780원,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92건/1,239,460원 등을 3일에서 최장 15일까지 납입을 지연하는 등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보건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